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882

발의연월일: 2022. 8. 17.

발 의 자:이인영·김두관·김승남

김원이 · 민형배 · 박상혁

박성준 • 변재일 • 윤건영

조오섭 · 최종윤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8개 구간으로 구분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2008년 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소득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지 않아국민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역시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2,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2,400만원 초과	144만원+(2,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천만원 이하	15퍼센트)	
6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84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억5천만원 이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억원 이하	38퍼센트)	
3억원 초과	0.4C0마이 + (2어이스 크게퀴느 그레이 40페레트)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억원 이하	42퍼센트)	
10이이 중 교	3억8,46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억원 초과	45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7]	· 정 안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 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제55조(세율) ①	
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종합소두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두과세표준	세율
<u>1,200만원</u> <u>이하</u>	과세표준의 6퍼센트	<u>2,400만원</u> <u>이하</u>	과세표준의 6퍼센트
<u>1,200만원</u> <u>초과</u> <u>4,600만원</u> <u>이하</u>	72만원+(1,2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15퍼센트)</u>	2,4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44만원+(2,400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15퍼센트)
<u> 4,600만원</u> <u> 초과</u> <u> 8,800만원</u> <u> 이하</u>	582만원+(4,6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24퍼센트)	6천만원 <u>초과</u> 8,800만원 이하	684만원+(6천만원을초과하는 금액의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8,800만원 <u>초과</u>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35퍼센트)</u>
<u>1억5천만원</u> <u>초과</u>	3,760만원+(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u>1억5천만원</u> <u>초과</u>	3,760만원+(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3억원 이하	<u>38퍼센트)</u>
<u>3억원 초과</u> <u>5억원 이하</u>	9,460만원+(3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0퍼센트)</u>
<u>5억원 초과</u> <u>10억원</u> <u>이하</u>	1억7,460만원+(5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2퍼센트)</u>
<u>10억원</u> <u>초과</u>	3억8,460만원+(10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5퍼센트)</u>

3억원 이하	<u>38퍼센트)</u>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40퍼센트)
<u>5억원 초과</u> <u>10억원</u> <u>이하</u>	1억7,460만원+(5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2퍼센트)</u>
<u>10억원</u> <u>초과</u>	3억8,460만원+(10억원을 <u>초과하는 금액의</u> <u>45퍼센트)</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